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17
----------	------

2016년 9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자 : 2016년 8월 12일
- 다. 회부일자 : 2016년 8월 16일
- 라. 상정결과 : 제27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년 9월 6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고흥석)

가. 제안이유

-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역사도시 서울의 도시관리 전략인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역사도시 서울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동력 제고
-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의 주요 주체로서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역사도시정책의 기본원칙과 역사도시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시책 및 지원의 근거조항 신설 필요

나. 주요내용

- 가. 조례명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로 변경하여 이미 2천년 이상 도시역사를 가진 古都 서울로서 과거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고려한 조례 명칭 부여.
- 나. 역사도시 정책의 기본원칙 신설(안 제6조).
- 다.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향유 관련 조항 신설(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 라. 역사도시 연구 지원 및 시민교육 지원 관련 조항 신설(안 제13조, 제14조)
- 마. 역사도시 정보화 및 교류협력 촉진 관련 조항 신설(안 제12조, 제15조)
- 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관련 조항 신설(안 제16조)
- 사.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민관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직무대행 및 위원의 제척·기피 조항 신설(안 제18조, 제20조, 제21조)

다.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협의 완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 완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제시(일부 수용)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 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 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6. 5. 26. ~ 6. 15.) 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 등 자료: 별도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붙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역사도시 서울의 도시관리 전략인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역사도시 서울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동력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기존의 문화재 보존·관리를 넘어서 역사에 기반한 시정 전반의 통합·조정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의 주요 주체로서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역사도시정책의 기본원칙과 역사도시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시책 및 지원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행정자치위원회 이명희의원 발의(2016. 2. 11.)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 3. 4. 상정되어 수정가결 되었음. 당시 상임위원회 심의시 집행부에서는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학술용역(‘15. 7.29.~’16. 3. 28)도 진행중이므로 주요내용이 미확정되었다고 당시 조례안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의 기본 계획이 완성된 이후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제정안을 수정가결한 바 있음.

- 현행 조례와 동 전부개정조례안을 비교하여 보면, 현행 조례가 총 21개 조로 구성된 데 비해 개정조례안은 4개의 장(제1장 총칙, 제2장 역사도시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3장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제4장 보칙)으로 나뉘어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시민의 권리에 관한 조(안 제3조), 역사도시정책의 기본원칙에 관한 조(안 제6조),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한 시책 마련에 관한 조(안 제8조) 등 11개 조가 신설되고, 축제 개최 및 지원(현행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역사도시관련 시민교육에 관한 조(제19조)와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조(제20조)가 삭제되어 총 27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 변경되거나 신설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조례명이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로 '2000년'이란 수식어를 제외시킨 바, 이는 이미 2천년 이상 도시역사를 가진 古都 서울로서 과거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고려한 조례 명칭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바, 이러한 조례명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현행 조례 제2조(기본이념)이 삭제된 대신 안 제6조(역사도시정책의 기본원칙)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었으며, 현행 조례 제6조(역사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의 경우 모두 6개의 호로 구성되었으나, 안 제7조(역사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시민의 권리, 연구 및 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과 기본계획수립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2개의 항과 8개의 호로 기술되었음.

- 이 밖에 개정조례안에서는 시민들의 역사문화자원 향유 권리(안 제3조 및 안 제11조)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역사문화자원의 활용), 안 제11조(역사문화자원의 향유), 안 제12조(역사도시정보화의 촉진), 안 제13조(역사도시연구의 지원), 안 제14조(역사도시 시민교육의 지원), 안 제15조(역사도시 교류협력의 촉진) 등이 신설되었음.

- 신설된 조문 중 안 제12조(역사도시정보화의 촉진)의 경우, 시장이 역사문화자원의 정보에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사도시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 공간정보 구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간정보가 현재에 머물러 있을 뿐, 과거의 정보 및 역사지도 구축과 관련된 정책이 부족한 점임.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도 현재의 공간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만 강조하고 있을 뿐,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과거’의 공간정보에 대한 어떠한 고려나 언급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역사도시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한 동 조문의 신설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현행 조례 제17조(축제개최 등)과 제18조(축제의 지원) 등 축제 관련 조문을 삭제한 것은 조례안 전체 흐름상 너무 세부적인 사

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 조례 제19조(시민교육)의 삭제는 안 제14조(역사도시 시민교육의 지원)에 반영되었기에 무방하며, 현행 조례 제20조(의견수렴)의 삭제는 개정안에서 시민과 단체에 대한 지원과 위원회 운영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갈음될 수 있으므로 삭제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역사도시서울추진위원회”의 기본계획과 의견을 반영하여 제출되어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쟁점사항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그리고 안 제16조에서 시장이 역사도시연구, 시민교육, 교류협력 또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 기관 및 단체 등의 설립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시가 이러한 분야 활동을 지원함은 타당하나, 관련 활동을 위한 민간기관 설립까지 지원하게 되면 남설이 우려되는 바임.

시에서 이미 설립한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연구원’ ‘서울기록원’ 그리고 서울시립대학부설 ‘서울학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기존에 설립된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등 박물관 조직을 확대 혹은 개편하여 역사도시관련 연구, 시민교육, 교류협력, 또는 전문인력 양성 분야를 지원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분야를 담당하게 되는 민간기관의 설립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할 것임. 만일, 역사도시서울 추진과 관련하여 특정기관의 신설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시에서 직접 설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현행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p>〈신설〉</p>	<p>제13조(역사도시연구의 지원) ① 시장은 역사도시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역사도시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학 연구 등을 수행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설립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3조(역사도시연구의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시장은 역사도시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학 연구 등을 수행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4조(역사도시 시민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역사도시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성 및 정체성 함양을 통한 시민의 역량강화와 자긍심 향상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나 교육기관 등의 설립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4조(역사도시 시민교육의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성 및 정체성 함양을 통한 시민의 역량강화와 자긍심 향상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나 교육기관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5조(역사도시 교류협력의 촉진) ① 시장은 역사도시 관련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와의 협력 및 다른 지역과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역사도시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역사도시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설립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5조(역사도시 교류협력의 촉진) ①~②(개정안과 같음)</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역사도시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설립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 한편 역사도시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이번 조례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는 “역사영향평가제 도입,” “(가칭)서울역사연구원 설립,”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설립” 그리고 “(가칭)역사도시서울기금 설치” 등으로써 모두 장기과제로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고 향후에 추진하기로 하였음.
- 참고로 동 전부개정조례안을 현행 조례와 비교한 개별 조문별 비교표는 다음과 같음.

현행	전부개정조례안
<u>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u> <신설>	<u>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u> 제1장 총칙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을 2000년 역사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도시경쟁력 있는 유구한 역사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을 되살려 현재와 미래로 전승·유지되는 역사도시를 조성하고 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보존 및 활용을 통하여 역사도시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로운 역사문화 향유와 서울특별시에 대한 자긍심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u>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이 조선왕조 이후 600년 된 도시가 아닌, 한성백제 이후 2000년 된 역사도시로서의 역사적·문화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u>	<삭제>
<u>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u>1. “역사도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실현하여 시민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역사적 자긍심과 정체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u>	<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u>1. “역사도시”란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이 되살아나 현재와 미래로 전승·유지되고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이 발굴·보존·활용되며 자유로운 향유가 보장되어 시민이 일상의 삶</u>

요 행	전부개정조례안
<p>가. 역사적 품격과 정체성 고양 나. 역사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공간의 조성 다. 역사자원의 활용을 통한 도시활력 창출 라.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역사 관련 산업의 진흥</p> <p>〈신설〉</p> <p>2. “역사도시 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구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역사도시 관련 행사로서 시민화합 및 역사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역사적·문화적·예술적·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p>	<p>속에서 지역적 자긍심을 가지는 도시를 말한다.</p> <p>2. “역사문화자원”이란 역사 속에서 형성된 유형·무형의 유산으로서 보존 전승할 가치를 갖는 것을 말한다.</p> <p>〈삭제〉</p>
<p>〈신설〉</p>	<p>제3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역사도시의 조성·진흥과 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보존·활용에 관한 정책 및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그 혜택을 향유하며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p>
<p>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이하 “역사도시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역사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역사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 ----- -----</p>
<p>〈신설〉</p>	<p>제2장 역사도시정책의 수립 및 추진</p>
<p>〈신설〉</p>	<p>제6조(역사도시정책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역사도시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의 회복 2.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에 기반을 둔 도시발전 3. 역사문화자원의 미래지향적 보존·관리 및 지속가능한 활용

요 행	전부개정조례안
<p>제6조(역사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사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u>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역사도시조성 및 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u> 2. <u>역사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u> 3. <u>역사도시 특성화에 관한 사항</u> 4. <u>역사도시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u> 5. <u>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u> 6. <u>그 밖에 역사도시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 <p><신설></p>	<p>4. <u>시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와 향유의 보장</u></p> <p>제7조(역사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사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u>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역사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u> 2. <u>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u> 3. <u>시민의 권리 보장 및 향유에 관한 사항</u> 4. <u>역사도시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u> 5. <u>역사도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u> 6. <u>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u> 7. <u>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u> 8. <u>그 밖에 역사도시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 <p>② <u>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u></p>
<p><신설></p>	<p>제8조(역사문화자원의 보존) ① <u>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p>② <u>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도시개발사업이 상호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p> <p>③ <u>시민은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보존·확산하는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7조(역사도시환경의 조성) ① <u>시장은 도시경관을 역사적으로 조성하고, 서울의 2000년 도시유산을 보존·복원하는데 힘써야 한다.</u></p>	<p>제9조(역사도시환경의 조성) ① <삭제></p>

요 행	전부개정조례안
<p>② 시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의 역사적 특색을 살리고, 역사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보존하도록 노력한다.</p> <p>③ 시장은 역사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신설〉</p>	<p>① 시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의 역사적 특색을 살려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을 조성·보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역사도시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시민은 역사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10조(역사문화자원의 활용) ①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시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1조(역사문화자원의 향유) ① 시장은 시민이 역사문화자원을 일상 속에서 향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시민이 역사문화자원을 일상 속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역사관이나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2조(역사도시정보화의 촉진) ①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정보에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사도시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역사도시정보화사업을 운영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3조(역사도시연구의 지원) ① 시장은 역사도시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역사도시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p>

외 행	전부개정조례안
	<p>학 연구 등을 수행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설립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4조(역사도시 시민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역사도시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성 및 정체성 함양을 통한 시민의 역량강화와 자긍심 향상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나 교육기관 등의 설립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5조(역사도시 교류협력의 촉진) ① 시장은 역사도시 관련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와의 협력 및 다른 지역과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역사도시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역사도시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설립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역사도시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설립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신설></p>	<p>제3장 역사도시서울위원회</p>
<p>제8조(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17조(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에 따른 역사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행	전부개정조례안
<p>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신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역사도시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시민대표 등 3. 시 관련 공무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p>	<p>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p> <p>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역사·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⑤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삭제〉</p>
<p>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p>	<p>제19조(위원의 임기) (현행과 같음)</p>
<p>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신설〉</p>	<p>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p>
<p>〈신설〉</p>	<p>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요 행	전부개정조례안
	<p>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p> <p>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p> <p>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p> <p>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p>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p>제22조(위원의 해촉) (현행과 같음)</p>
<p>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p> <p>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전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p>	<p>제2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현행	전부개정조례안
<p>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p>	
<p>제14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24조(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25조(수당 등)</p> <p>-----</p> <p>-----</p> <p>-----</p> <p>-----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26조(운영세칙) (현행과 같음)</p>
<p>제17조(축제개최 등) 시장은 시민의 역사도시 자긍심 고취와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p>	<p>〈삭제〉</p>
<p>제18조(축제의 지원) 시장은 자치구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축제개최자에게 개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삭제〉</p>
<p>제19조 (시민교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의 역사도시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p>	<p>〈삭제〉</p>
<p>제20조 (의견수렴)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시에는 시민과 역사도시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p>	<p>〈삭제〉</p>

현행	전부개정조례안
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제4장 보 칙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시장이 역사도시연구, 시민교육, 교류협력 또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 기관 및 단체 등의 설립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시가 이러한 분야 활동을 지원함은 타당하나, 관련 활동을 위한 민간기관 설립까지 지원하게 되면 남설이 우려되므로 수정함(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17
----------	---------

제안연월일 : 2016년 9월 6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시장이 역사도시연구, 시민교육, 교류협력 또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 기관 및 단체 등의 설립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시가 이러한 분야 활동을 지원함은 타당하나, 관련 활동을 위한 민간기관 설립까지 지원하게 되면 남설이 우려되므로 수정함.

2. 주요골자

- “설립 또는 활동을”을 “활동을”로 수정함(안 제13조에서 안 제16조 까지).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제2항, 안 제14조제2항, 안 제15조제3항, 안 제16조제2항 중 “설립 또는 활동을”을 각각 “활동을”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3조(역사도시연구의 지원) ① (생략) ② 시장은 역사도시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학 연구 등을 수행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u>설립 또는 활동을</u>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역사도시연구의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활동을 -----.
제14조(역사도시 시민교육의 지원) ① (생략)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성 및 정체성 함양을 통한 시민의 역량강화와 자긍심 향상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나 교육기관 등의 <u>설립 또는 활동을</u>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역사도시 시민교육의 지원) ①(개정안과 같음) ② ----- ----- ----- 활동을 -----.
제15조(역사도시 교류협력의 촉진) ① ~②(생략)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u>설립 또는 활동을</u>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역사도시 교류협력의 촉진) ① ~②(개정안과 같음) ③ ----- -----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u>설립 또는 활동을</u>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을 되살려 현재와 미래로 전승·유지되는 역사도시를 조성하고 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보존 및 활용을 통하여 역사도시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로운 역사문화 향유와 서울특별시에 대한 자긍심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도시”란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이 되살아나 현재와 미래로 전승·유지되고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이 발굴·보존·활용되며 자유로운 향유가 보장되어 시민이 일상의 삶 속에서 지역적 자긍심을 가지는 도시를 말한다.
2. “역사문화자원”이란 역사 속에서 형성된 유형·무형의 유산으로서 보존 전승할 가치를 갖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역사도시의 조성·진흥과 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보존·활용에 관한 정책 및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그 혜택을 향유하며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이하 “역사도시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역사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역사도시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역사도시정책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역사도시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의 회복
2.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에 기반을 둔 도시발전
3. 역사문화자원의 미래지향적 보존·관리 및 지속가능한 활용
4. 시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와 향유의 보장

제7조(역사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사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역사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권리 보장 및 향유에 관한 사항
4. 역사도시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역사도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역사도시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역사문화자원의 보존) ①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도시개발사업이 상호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보존·확산하는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역사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의 역사적 특색을 살려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을 조성·보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사도시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민은 역사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역사문화자원의 활용) ①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역사문화자원의 향유) ① 시장은 시민이 역사문화자원을 일상 속에서 향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역사문화자원을 일상 속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역사관이나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역사도시정보화의 촉진) ①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정보에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사도시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역사도시정보화사업을 운영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역사도시연구의 지원) ① 시장은 역사도시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

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역사도시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학 연구 등을 수행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역사도시 시민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역사도시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성 및 정체성 함양을 통한 시민의 역량강화와 자긍심 향상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나 교육기관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역사도시 교류협력의 촉진) ① 시장은 역사도시 관련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와의 협력 및 다른 지역과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역사도시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역사도시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역사도시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제17조(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역사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역사·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2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24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